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549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용한(기소), 정초롱, 김미선, 유선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전재형
판 결 선 고	2025. 11.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무죄 부분 기재 각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1)]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7.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2025. 3. 31.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이 제작한 제품 사진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F'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여 제품 판매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무죄 부분 기재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에 관한 기재와 같이 244회[2]에 걸쳐 피해자가 제작한 사진을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여 제품 판매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H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사보고(전력 확인)

1. H 이용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이 사건 공소장 및 이 사건 약식명령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73회 중 별지 무죄 부분 관련 29회를 제외한 횟수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진은 피해자의 제품 홍보를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서 창작적 노력과 개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위 각 사진이 게시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금지어 설정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이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위 각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진 중 별지 무죄 부분 기재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 중 인물이 해당 제품을 착용한 사진들의 경우 촬영자가 적절한 인물을 선정하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도록 하며, 제품과 함께 착용할 다른 의상이나 소품 및 배경을 선택하여 구도, 카메라의 각도 및 조명을 조절한 것으로 보이고, 인물 없이 해당 제품을 촬영한 사진들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품을 특색 있게 배치·배열하거나, 그림자 또는 배경을 활용하고, 제품의 특징적인 문양이나 마크 등을 이용한 다양한 표현방법을 선택하거나, 입체적 형태로 표현하는 등 특수성이 확인되는바, 위 사진들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그러나 별지 무죄 부분 기재 사진들의 경우 배경을 흰색으로 하여 신발이나 가방 등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단순히 대각선 위나 옆 또는 정면에서 평면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사체의 선정·배치 등을 비롯한 촬영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사진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복제권의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고의는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등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구매하여 이용한 'H' 프로그램은 피고인과 같은 구매대행업자들이 판매하려는 상품들을 자동적으로 대량등록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구동원리 자체에서부터 저작권을 침해할 고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또한 H 이용약관에는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구매하여 이용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프로그램에 의한 대량등록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② 더구나 피고인은 2022. 7.경 타인이 저작권을 소유한 십자수 도안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여 2022. 10. 27.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3. 3.경에는 2021년에 H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른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았으며 2023. 4.경에는 그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판매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상품의 이미지 혹은 제목이 귀사의 상표권, 특허,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해당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면 해당 상품을 즉각 시정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문구를 게시해두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일이 검수작업을 하기는 어렵고 여러 브랜드명에 관한 금지어를 수집하여 설정해두고 이를 늘려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려 했다고 설명하였는데, 수많은 이미지가 대량등록되는 H 프로그램의 작동원리상 한정된 금지어를 나열하여 설정하는 행위가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전면적이고 충분하게 방지하는 방식이라고 보이지 않고, 실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브랜드명에 관한 금지어 설정이 안 되어 피해자의 사진 저작물이 그대로 게시되었는바, 피고인이 검수·관리 등을 통해 금지어 설정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일부 금지어를 설정하려고 시도한 것이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5 제1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 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점, ②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비용 및 노력을 들여 해당 제품 사진을 제작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이 비용 등을 투입하여 제작한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용방법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도 위 사진을 활용하여 공식 홈페이지나 일정한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별도의 계약 없이 피해자의 사진저작물을 자신의 판매영업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사진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판매광고를 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제품 판매경로에 관한 영업전략이나 판매방침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당연히 피해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년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무렵 H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른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저작권 침해행위의 횟수 및 기간이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8.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제작한 제품 사진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F'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여 제품 판매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무죄 부분 기재 사진에 관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가 제작한 사진을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여 제품 판매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무죄 부분 기재 사진들이 촬영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이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별지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중,

○ 'F'의 'I' 사이트에 게시된 순번 13, 25 사진 (2장)

○ 'J'의 'K' 사이트에 게시된 순번 1 내지 13, 15, 16, 18 내지 28, 35 사진 (27장)

[총 29장]